

#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내규

시행일 : 2022. 9. 1

##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College of Art&Fusion Design,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 제3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③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은 학과별로 약간 명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 2 장 학사운영위원회 및 직제

### 제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 또는 전공별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석사과정, 연구과정, 특별과정의 입학 및 졸업사정
4.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직제)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및 각 학과 또는 전공별 주임교수를 둔다.

### 제 3 장 입학

#### 제7조(입학 시기 및 전형의 종류)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 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선발하는 조기전형을 둔다.

#### 제8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 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제9조(지원절차)

-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함께 모집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의 특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함께 모집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형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행 할 수 있다.
-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배점기준 및 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제11조(편입학 및 재입학)

- ① 본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② 편입학 및 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재학 중 수업 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4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반액을, 4학점 이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기준)

① 제13조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의 학력사항 및 입학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① 휴학자는 제14조 1항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제 4 장 수업·학점 및 성적

제16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은 과정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은 별도의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수업)

① 본 대학원의 강의, 실습, 시험 등은 각 학과, 전공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장은 다른 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이수학점)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24학점으로 한다.

제20조 (과정의 수수료)

① 해당 과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제1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만족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한다.

② 과정 수수료 시기는 매 해당 학기말로 한다.

③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 각 과정의 학기당 학점 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수강의 경우에는 6학점을 초과하여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제22조(성적평가)

①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은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그 등급과 평점은 대학원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3조(학점인정 및 평점)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이상, 성적 등급은 C-(1.7)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2.7)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성적등급 I(미완)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보완 제출기간인 1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F학점 처리한다.

③ P등급의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④ 본 대학원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경우, 주임교수의 심의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4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 제24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소정 양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 기재일자)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4. 교육실습 및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1일)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 이내)
7.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 제25조(수강신청 및 정정)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신청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26조(추가시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과목담당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수강)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출·결강 관리)

- ① 교강사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된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는 휴강하게 된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 ① 본교의 대학원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학점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외국대학연수및연수학점인정에관한규정」 및 「외국대학교환학생교류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전과·전공변경)

- ① 학과변경(이하“전과”라 한다) 또는 전공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학기 개시일 이전에 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을 불허한다.
- ② 전과 또는 전공변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③ 전공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전과 또는 전공변경의 경우, 이수과목 및 전공을 고려하여 재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전공의 이수)

- ① 대학원 학생은 각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전공 이수조건은 학과(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학과에 개설된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 5 장 학위수여

제32조(학위종류)

본 대학원의 학위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3조(학위수여요건)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2. 전공종합시험(전공에 관한 구술시험 포함)에 합격한 자
- 3.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개인공연을 개최한 자
- 4.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S-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제34조(전공종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 ③ 전공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④ 불합격한 과목은 당해 학기 내 1회에 한하여 재응시가 가능하며, 여기에도 불합격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전공종합시험에 전 과목을 재응시 해야 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료 과목의 미운영 또는 지도교수 부재 등의 사유로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3과목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과목 미만의 과목으로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예외사항은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며, 제3항과 제4항의 합격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35조(전공종합시험의 시기 및 절차)

① 전공종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본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을 공고한다.

②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전공별로 실시하고 주임교수는 그 결과 및 성적을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지도교수의 선정)

① 3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논문(졸업을 위한 개인공연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의 학위지도교수를 명시한 논문예비계획서를 개강 후 30일 이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의 내용과 희망 학위지도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석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동일 기수의 학생 3인 이상을 지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학위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학위지도교수의 동의 및 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37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지도교수의 자격)

① 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 전임교원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승인할 경우 학위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③ 학제 간 논문지도가 필요하여 주임교수의 건의를 받아 본 대학원장이 승인할 경우 공동 학위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38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예비계획서 제출)

논문예비계획서는 3기에 재학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배정받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공개발표)

①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 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또는 개인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개발표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소속 전임교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단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③ 공개발표의 실시결과는 주임교수가 취합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에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⑤ 공개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이 공개발표를 재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발표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를 다시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공개발표를 다시 하고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

여야 한다.

#### 제40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 ①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외국어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개인공연 개최)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개인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 평균 성적 B-(2.7)이상
  3. 전공종합시험 합격
  4. 공개발표 합격
-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개인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제출 또는 개인공연 개최 승인서와 함께 심사를 위한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개인공연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42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심사위원)

- ①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관련 학계의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외 학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 제43조(학위청구논문/개인공연 심사)

- ① 논문심사는 논문 내용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논문대체과목)

- ① 논문대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4학기 동안 24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 ③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0(3.0)이상 이어야 한다.
- ④ 논문대체과목 중 성적이 B0(3.0)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대체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제45조(학위수여 결정)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6조(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논문 또는 작품의 표절, 논문의 대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대학원장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 제 6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 제47조(규정준수의무)

본 대학원생은 대학원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본 내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휴학)

-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장은 학생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재학 중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 ④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최초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학기 중 임신, 출산
  3. 종합병원 발급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49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직후의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5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양식의 자퇴원을 전공주임교수와 부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51조(제적)

- ① 대학원학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 ② 제적은 본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단, 전항 제3호에 의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52조(징계)

- ① 학생이 본교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되 무기정학·제적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53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정규학기 재학생인 자(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인 자(우수장학에 한함)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3. 총장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② 장학금의 이중 수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 7 장 편입학

제54조(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5조(구비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9조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방법은 제10조의 입학전형 방법을 준용한다.

제57조(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 주임교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58조(수업연한)

편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 제 8 장 외국인학생

제59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재정능력은 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60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61조(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단,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 제62조(외국인 등록)

- ① 본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을 초과해서 국내 체류 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미입국, 사망, 한국국적 취득, 졸업·연수종료, 학위교류 등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등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4조(외국인 학생 보험가입 의무)

외국인 입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5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논문대체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수료자가 제41조(논문대체)에 의한 논문 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본인의 수료한 학과가 존재하여야 하며, 제12조 제3항에 의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학과가 폐과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학사운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정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콘텐츠	예술학석사	40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예술학석사	

[별표 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경희동문장학	본교 동문,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등록금의 13%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경희가족장학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본교에서 2년 이상 봉직하는 교직원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을,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장학	공무원(직업군인 포함)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는 등록금의 15%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입학 전 또는 직전학기 종강 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만 한다.
우수장학	대학원 생활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모범장학	학교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목련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로서 타 장학의 이중 수혜를 받지 않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목련장학금을 줄 수 있다.